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7] [해양수산부령 제415호, 2020. 6.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기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며, 각종 선박 검사 신청 시 통합 신청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의 범위를 가축, 살아 있는 수산물,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참여를 위해 시험·조사 등의 업무용 선박에 승선하는 자를 임시승선자의 범위에 추가함.

##### 나.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안 제32조 및 별표 15의5)

구명뗏목, 구명정 등을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나 여객선 외의 선박을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 등을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 변경허가의 요건을 완화함.

##### 다. 선박검사 등의 신청을 위한 통합서식의 근거 마련(안 제87조 신설)

신청인과 대행기관의 편의를 고려하여 건조검사, 정기검사 등 선박관련 검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기존 신청서식을 대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97조의2)

3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체검사원 또는 기관(機關)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 개정문

#### ◎ 해양수산부령 제415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해당 선박과"를 "선박정비, 화물관리, 안전관리 등 해당 선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습 등"을 "실습"으로, "승선하는 자"를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다.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10. 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3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적재하여"를 "실어"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 자"를 "않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제한"을 "실은"으로 한다.

가.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 하역·수리작업·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종성에"를 "조종성능에 중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개조 또는 수리

가.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교체

나.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교체

다.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 주요부의 개조 또는 수리

제22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가목 중 "1986년 7월 1일"을 "2016년 7월 1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198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 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제24조제5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흡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1. 국제만재흡수선증서 사본

2. 건현 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

3. 건현 계산서 사본

제32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조사항을 요약한 서류

제32조제4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등으로 구성된"을 "등으로"로, "자문을 하게 할"을 "자문에 응하게 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1호"를 "별표 15의5 제1호"로, "자문 위원회의"를 "해당 자문위원회에의"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지정시험기관"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를 "제2항에 따른"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을 요청"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중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보완을 요청"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재화물"을 "실린 화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제한"을 "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8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을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으로,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를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로 한다.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검사신청 서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향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87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향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면제증서·국제만재흡수선면제증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54조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향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8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0조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95조제3항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산정함에 있어서"를 "산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마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7조의2제1항제2호마목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6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선원가족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9.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제5조제9호에 따른 화물관리인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별표 6 제10호(중전의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8호까지에도"를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로,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 및 제8호를"을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라) 중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을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 또는 하반(下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양호하지 않다고 인정되면"을 "양호하다고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보기(補機)"를 "선박의 추진 및 항해와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보기(補機)"로 하고, 같은 목 2) 중 "크랭크축베어링의 상반"을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또는 하반"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1)가)(3) 중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및"을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또는 하반과"로 하고, 같은 목 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선미관축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에는 주축을 말한다)을 뽑아낼 것. 다만,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확인 결과에 따라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주축을 뽑아내지 않을 수 있다.

- (1) 커플링 볼트의 상태
- (2) 주축의 선수축 및 선미축 베어링 상태
- (3)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 상태(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우)
- (4) 임펠러 상태
- (5) 주축 선수축 밀봉장치의 주요부분
- (6) 개방된 스러스트 베어링 상태

별표 11 제1호나목4) 중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선박의 추진 및 항해와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보기"로 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추진축계와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질의 프로펠러축계"를 "스테인레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질의 프로펠러축계 및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추진축계"로 한다.

별표 15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의 표의 무선설비의 종류란 중 "레이더트랜스폰더(SART)"를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 장치(SART 또는 AIS-SART)"로 한다.

별표 31 제1호가목의 제목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최대선회반경"을 "최대선회반지름"으로,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2면의 2.2부터 2.11까지를 각각 2.3부터 2.12까지로 하고, 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_\_\_\_\_을(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협약의 제II-1장 G편 요건을 갖춤\*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 as fuel\*  
/N.A.\*

별지 제10호서식 8면 제3호 표의 1.4 INMARSAT 선박지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	--

별지 제10호서식 9면 제5호 표의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	--

별지 제12호서식 6면 제2호 표의 1.4 INMARSAT 선박지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7면 표의 4.2 INMARSAT (INMARSAT)란을 삭제한다.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	--

별지 제13호서식 2면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1 위의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조, 기관 및 설비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으며 협약 제II-1장 및 제II-2장의 관련 요건을 갖춤(화재안전장치 및 설비, 화재제어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

the condition of the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as defined in the above regulation wa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hapters II-1 and II-2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2 이 선박은 \_\_\_\_\_을(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협약 제II-1장 G편의 요건을 갖춤\*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 as fuel\*  
/N.A.\*

별지 제14호서식 7면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구명설비의 상세

##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2. 대빛 진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davit lunched lifeboats			3.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free-fall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3.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 정의 수(제3장 43규칙*)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111/43*)			3.2 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 31규칙 및 LSA Code 4.7)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111/31 and LSA Code, section 4.7)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제3 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111/31 and LSA Code, section 4.6)			3.3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regulation 111/31 and LSA Code, section 4.8)		
2.4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 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 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regulation 111/31 and LSA Code, section 4.8)			3.4 내화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 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regulation 111/31 and LSA Code, section 4.9)		
2.5 내화 구명정의 수(제3장 제 31 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111/31 and LSA Code, section 4.9)			4. 모터 구명정의 수 (위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4.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2.6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5.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2.6.1 구명정의 수 Number			5.1 위의 2. 및 3.의 구명정 총수 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6.2 종류 Type					

\*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별지 제14호서식 8면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 d side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6. 구명뗏목 Liferaft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6.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9. 방수복 Immersion suits	
6.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9.1 총수량 Total number	
6.1.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9.2 구명조끼의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6.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6.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11. 구명설비용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6.2.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11.1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 장치의 수 Number of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s	
6.3 제3장 제31규칙 1.4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required by regulation III/31.1.4			11.1.1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SART)	
7. 구명부환의 수 Number of lifebuoys			11.1.2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11.2 쌍방향 VHF 무선 전화장치의 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별지 제14호서식 9면 제3호 표의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2면 2.2부터 2.12까지를 각각 2.3부터 2.13까지로 하고, 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이 선박은 \_\_\_\_\_을(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협약 제II-1장 G편의 요건을 갖춤\*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 as fuel\* /N.A.\*

별지 제14호의2서식 9면 제3호 표의 1.4 INMARSAT 선박지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4.2 INMARSAT란을 삭제한다.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	--

별지 제14호의2 서식 10면 제5호 표의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법장치용 수신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법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	--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중전의 제16호서식) 중 "「국제액화가스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규칙 2.2.5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6.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에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

.2\* 규칙 2.2.7에 의해 2.2.6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a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위 제5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5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위 제5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5 above; or

.4)\* 위 제5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5 above;

.3\* 이 증서에 부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별지 제16호의2서식(중전의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중 "선박번호 또는 신호 부자"를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액화가스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규칙 2.2.3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3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4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에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4 of the Code

.2\* 규칙 2.2.5에 의해 2.2.4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4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a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4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4)\*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3\* 이 증서에 부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중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를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1쪽 중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국제산적화학물코드」"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규칙 2.2.5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되어야 함2).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2)

.2 규칙 2.2.7에 의해 2.2.6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2).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2).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2);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2);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2);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2); or

.3)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2);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2); or

.4)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2);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2);

- .3 이 증서에 부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2).
-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2).

별지 제18호서식 제8쪽 중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를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위험화학품산적운송코드」"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가 규칙 2.2.1.1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quired by paragraph 2.2.1.1 of the Code have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 .1\* 규칙 2.2.1.2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1.2 of the Code.

- .2\* 규칙 2.2.1.3에 의해 2.2.1.2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1.2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1.3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1.2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제시된 적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or
-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 .3)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or
- .4)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 .3\* 이 증서에 부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중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를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제3호 표의 항목란 중 "1.4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을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으로 하고, 같은 표 중 4.2 INMARSAT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제5호 표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
--	-------

별지 제23호서식 중 "부력중심"을 "부면심(浮面心, 트림이 생기기 전의 수면선과 트림이 생긴 후의 수면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하고, "hight"를 "height"로 하며, "부심에서 \_\_\_\_\_이며(최상층 갑판으로부터 \_\_\_\_\_m)\* (용골 상부부터 \_\_\_\_\_m)\* 이다."를 "길이 방향의 부면심(浮面心)에서 (최상층 갑판으로부터 하방으로 \_\_\_\_\_mm)\* (용골 하면으로부터 상방으로 \_\_\_\_\_mm)\*에 (표시)\* (규정)\* 되어 있다."로 하고, "line is \_\_\_\_\_at"를 "line is (marked)\* (defined)\* at"로 하며, 같은 서식의 「2000 국제고속선 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제3호 표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_____
--	-------

별지 제23호서식의 「2000 국제고속선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제4호 표의 항목란 중 "1.4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을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으로 하고, 4.2 INMARSAT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방향 현장 무선통신기 121.5MHz 및 123.1MHz Two-way on-scene radiocommunications 121.5 MHz & 123.1 MHz	_____
--	-------

별지 제25호서식 중 "포장된 형태의 폐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에 관한 국제코드(INF CODE)"를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INF CODE)」"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④ 중 "선회반경"을 "선회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서식 ⑦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④ 중 "선회반경"을 "선회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서식 ⑦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호, 제87조 및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5의5]

변경허가의 대상(제32조제2항 관련)

1.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
2. 선박의 용도 변경(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5. 구멍뿔목, 구멍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거나 제작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정식의 가스·포말·가압분무·불활성가스 소화장치 및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7. 여객선의 경우, 여객실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구조적 변경이 아닌 내부장식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비 고

1. 항해구역의 변경 등으로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에 변경이 있어 구멍뿔목, 구멍정 등 선박시설을 제거한 경우는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은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변경이나 개조 후 경하상태(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변경이나 개조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 경우
  - 나.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이 제정·개정되어 그 기준에 맞춰 선박시설을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제32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법 제28조에 따른 복원성 유지 대상 선박이 아닌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  
면)

(1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 적합증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370(93)에 의해 개정된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5(48)]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resolution MSC.5(48)) as amended by resolution MSC.370(93))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화물용적 Cargo Capacity(m <sup>3</sup> )	선형 Ship Type	IMO 번호 IMO Number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gas carrier was commenced: \_\_\_\_\_, \_\_\_\_\_

이 선박은 코드의 모든 개정사항을 준수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_\_\_\_\_

이 선박은 코드 중 다음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The ship is exempted from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ode:

\_\_\_\_\_

이 증서는 다음의 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코드 1.4절에 따라 검사를 하였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4 of the Code:

2. 검사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부착물, 장치 및 재료와 이들의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우며 또한 이 선박은 같은 코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s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s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 3. 다음의 설계 기준이 적용됨:

That the following design criteria have been used:

## .1 주위의 대기 온도

ambient air temperature \_\_\_\_\_ °C

## .2 주위의 물 온도

ambient water temperature \_\_\_\_\_ °C

## .3

탱크 형식 및 번호 Tank type and number	응력계수 Stress factors				재료 Materials	안전밸브의 최대 허용 설정 압력 MARVS
	A	B	C	D		
화물관 Cargo piping						

주의: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 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Note :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the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 .4 화물 탱크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_\_\_\_\_ °C 에서 결정되었음.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argo tank material were determined at \_\_\_\_\_ °C.

4. 이 선박은 코드의 모든 관련 운영 규정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화물의 산적 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suitable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re observed.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sup>†</sup> Conditions of carriage <sup>†</sup>				탱크 적하 조건 Tank Loading Condition
	탱크번호 Tank Numbers	최저온도 Minimum Temperature (°C)	최대압력 Maximum Pressure (kg/m <sup>2</sup> )	최대밀도 Maximum Density	

\*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1에 계속됨  
Continued on attachment 1, signed and dated sheets.

\*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 이 란에는 적하화물에 대한 탱크번호, 최저온도, 최대압력, 최대밀도 및 적하 조건이 명기되어야 함  
Tank numbers, min. temperature, max. pressure, max. density and tank loading conditions are to be specified in this column.

5. 코드 1.3\*/2.6.2\*에 따라 이 코드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선박에 대해 수정됨:

That, in accordance with 1.3\*/2.6.2\*,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코드 2.2.5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코드 2.2.6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

.2\* 코드 2.2.7에 의해 2.2.6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코드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a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4)\*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and

.3\* 이 증서에 부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만약 위의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하 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ould be comm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i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

이 증서는 규칙 제1.5절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1.4 of the Code.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출 것

Delete as appropriate.

\*\* 승인을 받은 다른 적하자료를 이 증서에 포함시키는 대신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로 이 증서에 첨부할 수 있음

Instead of being incorporated in the Certificate, this text may be appended to the Certificate if duly signed and stamped.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_\_\_\_\_선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 검 사 의 확 인

##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코드의 제1.4.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4.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출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4.6.8.3항에 따른 연차 검사/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4.6.8.3

이 증서는 선박이 코드 제1.4.6.8.3항에 따른 연차/중간 검사 결과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4.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4.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4.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코드의 제1.4.6.3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4.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 검사 완료 후 제1.4.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4.6.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코드의 1.4.6.4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4.6.4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4.6.5/1.4.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4.6.5/1.4.6.6 applies

이 증서는 코드 제1.4.6.5\*/1.4.6.6\* 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4.6.5\*/1.4.6.6\*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1.4.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4.6.8 applies

코드 제 1.4.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1.4.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코드 제 1.4.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1.4.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출 것  
Delete as appropriate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이 별지는 전 4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조건에서 계속됨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3,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 탱 크 번 호 등 )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p>날 짜 Date: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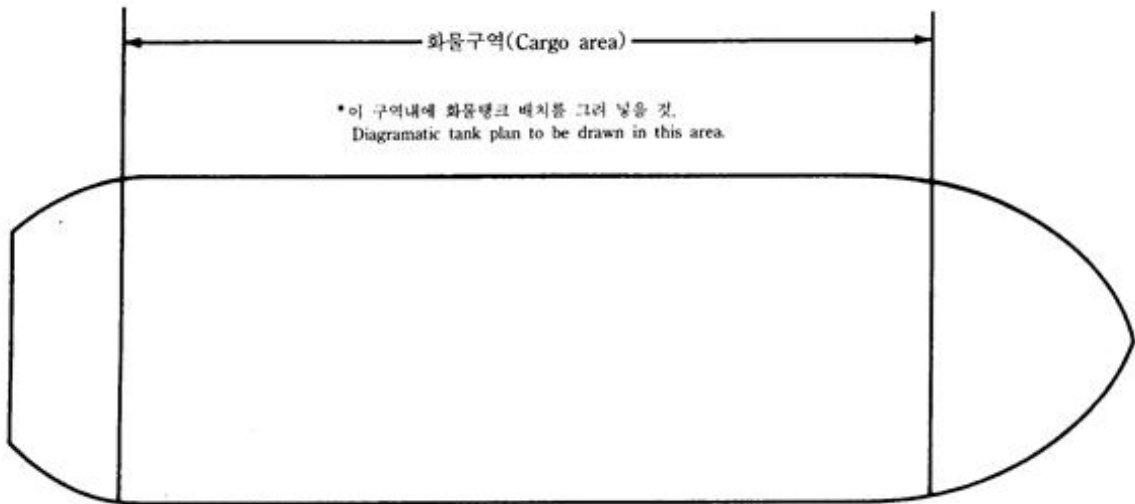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탱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날 짜  
Date: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 2.3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코드의 규정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 and the equipment of the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2.4 구명줄 발사기와 구명설비용 무선설비가 코드의 규정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and radio installation used in life-sav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2.5 이 선박은 무선설비에 관한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 2.6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기능이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2.7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장치 및 해사 간행물에 관한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2.8 이 코드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규정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이 비치되어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 2.9 그 밖의 모든 점에서 이 선박은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 발행되지 않았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 has not\* been issued.
4. 이 선박은 1974 SOLAS 협약(개정 포함)에 따라 발행된 증서를 소지하고/ 소지하지 않고\* 있음.  
That the ship has/has not\* been provided with Certificates issued under the 1974 SOLAS Convention as amended.

이 증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급법인명(한글 및 영문)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본 증서 제2.1항에 해당하는 선체, 기관 및 설비의 연차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SURVEYS RELATING TO HULL, MACHINERY  
AND EQUIPMENT REFERRED TO IN SECTION 2.1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본 증서 2.2, 2.3, 2.4, 2.6, 2.8 및 2.9항에 해당하는 구명 및  
그 밖의 설비의 연차 및 중간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RELATING TO  
LIFE-SAVING APPLIANCES AND OTHER EQUIPMENT REFERRED TO IN  
SECTION 2.2, 2.3, 2.4, 2.6, 2.7, 2.8 AND 2.9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본 증서 2.5항에 해당하는 무선설비의 정기적 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RELATING TO RADIO  
 INSTALLATIONS REFERRED TO IN SECTION 2.5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중 간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중 간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중 간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for the extension of the certificate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본 증서는 코드 제1.7.3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7.3,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특수목적선 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SPS)  
Record of Equipment for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Form SPS)

이 기록부는 특수목적선 안전설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1. 선박의 개요  
Particular of ship

선박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특수용도 승선자 수(여객 포함)  
Number of special personnel on board(including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_\_\_\_\_

무선설비를 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최소 승선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on board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oar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	.....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	.....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코드, 4.5절)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5)	.....	.....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코드, 4.6절)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	.....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	.....
2.4.1 구명정의 수 Number	.....	.....
2.4.2 형식 Type	.....	.....
3. 모터 구명정의 수(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	.....
3.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	.....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	.....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	.....

5. 구명뗏목 Liferafts	.....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 are required	.....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
5.1.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 are not required	.....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
5.2.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
6. 부유 장치 Buoyant apparatus	.....
6.1 장치의 수 Number of apparatus	.....
6.2 제공될 수 있는 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capable of being supported	.....
7. 구명부환의 수 Number of lifebuoys	.....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
9. 방수복 Immersion suits	.....
9.1 총 수량 Total number	.....
9.2 구명조끼 요건에 맞는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
10.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
11. 구명설비용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
11.1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수 Number of radar transponders (SART)	.....
11.2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
11.3 쌍방향 VHF 무선 전화장치의 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

\* LSA코드 제4.1.5.1.24항, 제4.4.8.31항 및 제5.1.2.2.13항에서 요구되는 것은 제외함  
Ex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LSA Code, paragraphs 4.1.5.1.24, 4.4.8.31 and 5.1.2.2.13.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2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alerting	.....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	3 해사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
1.1.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인코더 DSC encoder	.....	3.1 NAVTEX 수신기 NAVTEX receiver	.....
1.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	3.2 EGC 수신기 EGC receiver	.....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	3.3 HF 직접인쇄 무선전신 수신기 HF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 receiver	.....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	4 위성 EPIRB Satellite EPIRB	.....
1.2.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인코더 DSC encoder	.....	4.1 COSPAS-SARSAT COSPAS-SARSAT	.....
1.2.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	5 VHF EPIRB VHF EPIRB	.....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	6 선박의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hip's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	.....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	6.1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 (SART)	.....
1.3.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인코더 DSC encoder	.....	6.2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
1.3.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		
1.3.4 직접인쇄전신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y	.....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regulation IV/15.6 and 15.7)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_\_\_\_\_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_\_\_\_\_

4.3 해상정비능력  
Of-sea maintenance capability \_\_\_\_\_

##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 자기 컴퍼스 <sup>*</sup> Standard magnetic compass <sup>*</sup>		3.5 자동추적장치 <sup>*</sup> Automatic tracking aid <sup>*</sup>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up>*</sup> Spare magnetic compass <sup>*</sup>		3.6 제2 자동추적장치 <sup>*</sup>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sup>*</sup>	
1.3 자이로 컴퍼스 <sup>*</sup> Gyro compass <sup>*</sup>		3.7 플로팅설비 <sup>*</sup> Electronic plotting aid <sup>*</sup>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sup>*</sup>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sup>*</sup>		4.1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sup>*</sup>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sup>*</sup>		4.2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sup>*</sup>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sup>*</sup>		5.1 항해자료기록장치 <sup>**</sup> Voyage data recorder(VDR) <sup>**</sup>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sup>*</sup>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sup>*</sup>		5.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sup>**</sup> (S-VDR) <sup>**</sup>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s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up>*</sup>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through the water) <sup>*</sup>	
1.9 선수방위 전달장치 <sup>*</sup>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sup>*</sup>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up>*</sup>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2.1 항해용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ECDIS) <sup>**</sup>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sup>**</sup>		6.3 음향측심기 <sup>*</sup> Echo sounding device <sup>*</sup>	
2.2 ECDIS의 백업장치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7.1 타각지시기 등 <sup>*</sup>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sup>*</sup>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7.2 선회율 지시기 <sup>*</sup> Rate of turn indicator <sup>*</sup>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8. 음향수신장치 <sup>*</sup> Sound reception system <sup>*</sup>	
3.1 위성항법 장치/지상파무선항해 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 장치용 수신기 <sup>*, **</sup>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meradio navigation receiver <sup>*, **</sup>		9. 비상조타실의 전화 <sup>*</sup>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sup>*</sup>	
3.2 9GHz 항해용 레이더 <sup>*</sup> 9GHz radar <sup>*</sup>		10. 주간신호등 <sup>*</sup> Daylight signalling lamp <sup>*</sup>	
3.3 제2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sup>**</sup> Second radar(3 GHz/9 GHz) <sup>**</sup>		11. 레이더 반사기 <sup>*</sup> Radar reflector <sup>*</sup>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sup>*</sup> Automatic radar plotting aid(ARPA) <sup>*</sup>		12.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13.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설비는 허용됨. 그 밖의 설비의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